

(앞 쪽)

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								처리기간	
※ ⑥란은 해당사항에 표기하십시오.								30일	
신청인	①성 명					②주민등록번호			
	③주 소	(전화 :)							
④취득 무대예술자격 (※1,2급 신청자의 경우 해당)		자격종목			등급			취득시기	년 월 일
신청내역	⑤인정신청자격별	자 격 종 목			등급				
	⑥인정신청 실무경력 (※1,2급 신청자의 경우 하위 자격증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)	공연장 종사경력				. . . ~ . . . (년 월)			
						. . . ~ . . . (년 월)			
						. . . ~ . . . (년 월)			
						총경력 년 월			
		공연업 종사 경력	구 분		연도별 인정대상 업무분야 참여 건수 (※최근부터 필요한 기간 연도의 실적만 기재)				
			년	년	년	년	년	년	
공연 제작 (작품수)	공연기간 90일이상 그 외								
		기기설치 (공사수)							

「공연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실무경력인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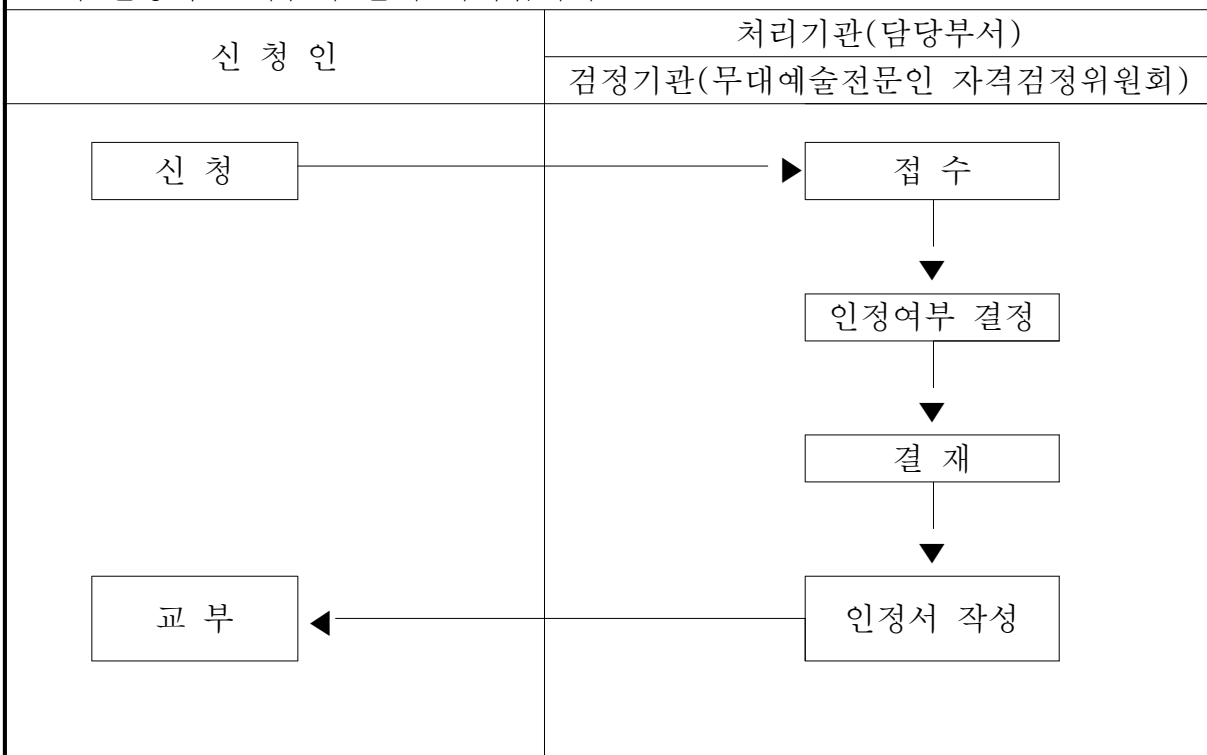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검정기관의 장 귀하

<구비서류> ※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1. 신청인의 이력서 1부 2. 「공연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※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. 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수 수 료 검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
---	---

1.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

2. 실무경력 인정기준(「공연법 시행령」 별표 2)

○ 공연장 종사자 : 공연장 근무기간

○ 공연업 종사자

-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(공사를 포함합니다)
-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

3. 「공연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라 공연장 종사자 및 공연업 종사자가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분야는 자격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.

- 무대기계 : 무대기계의 조작·관리, 무대장치의 설치·전환
- 무대조명 : 조명기기의 설치·조작·관리
- 무대음향 : 음향기기의 설치·조작·관리

※ 그 밖에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이 정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